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5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7,568,868	13,427,066
일반회계	402,043,005	12,061,290
특별회계	45,525,863	1,365,776
공기업특별회계	13,253,519	397,60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253,519	397,606
기타특별회계	32,272,344	968,170
수질개선 특별회계	13,248,844	397,465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20,875	15,626
주택사업 특별회계	4,488,471	134,65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24,168	24,725
자활기금 특별회계	1,915,507	57,465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9,849,828	295,49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6,263	28,088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4,669	13,640
기반시설 특별회계	33,719	1,012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또한 계속비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1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